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 월)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9월 2일  
연만흠 의원 외 6인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 대체)

### 1. 제안이유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정하여진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함.

- 나.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에서 같은 법 제149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제94조로 함(안 제1조)
- 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3항과 제4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제1조(목적)에서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함(안 제2조)
  - 2) “및”을 “과” 또는 “나”로 함.
  - 3) 기타 등 일본식 표현,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7.5)에 따라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서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가 「지방자치법」 제14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로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 명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 조례명을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함.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의 개정
  -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 「지방자치법」 제149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조항의 삭제
  - ▶ 제3조제3항과 제4항
  - ▶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금번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법령조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 요지 : “생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0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2일

발 의 자 : 연만흠,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의원(7인)

### 개정이유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정하여진 규정을 삭제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함.

나.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에서 같은 법 제149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제94조로 함(안 제1조)

다.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과 제4항, 안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 1) 제1조(목적)에서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함(안 제2조)
- 2) “및”을 “과” 또는 “나”로 함.
- 3) 기타 등 일본식 표현,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행정국)

다. 예산조치 :

라. 규제심사 :

##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
2.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놓아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94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